# 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22호

1. 제　　명 : 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

2. 개정이유

○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고

○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복무규정 일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29조(특별휴가)

- 제1항 〔별표 2)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 : 10일 → 20일
- 제16항 남성 직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일 : 2일 → 10일

제28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　10월 19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　한 석 현